

I

검역제도 변경사항

1. FDA, 농민 불만해소를 위한 식품안전법 일부 수정

1) 소규모 농업종사자 대상, 식품안전기준 완화 추진(2014.9.19.)

- FDA는 지난해 제안된 식품안전관련 법안이 생계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많은 농민들의 요청으로 식품 안전법 일부를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지난해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농민들은 각종 오염을 대비한 예방책으로 노동자들의 손의 청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관개용수의 수질검사와 농경지 주변에 동물 혹은 가축을 없애야 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음
 - * 식품제조업체 측 또한 그들의 시설이 위생안전 관련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대책안을 제출해야함
- 그러나 이번 FDA가 제안한 신규 법안에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이전보다 낮춰 농산물 생산에 부담이 낮아졌으며 관개용수 내 박테리아의 수에 대한 일부 기준을 변경하고 정기 검사의 빈도를 줄이고 생가름(raw manure) 사용 기간 제한을 축소했음

2) FDA, 추진 현황

- FDA는 기존 제안이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해당 법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부들과 식품 생산자, 수출입자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 이외에도 식품 대상 예방통제, 동물사료 대상 예방통제, 해외 공급업체 인증 프로그램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추가사항을 발표함
- 특히 오는 11월 13일(목) FDA 본사에서는 제안된 법안에 새롭게 추가 및 수정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들에게 규칙제정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임

3) 시사점

- 이번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자, 수출입업자들에게 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복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식품안전을 주요 국제경쟁력 지표로 인식하고 미국의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생산자, 유통업자, 수출입업자들의 경제적 효용 또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한국농식품을 생산하고 수출입하는 업체 관계자들 또한 이번 제안이 적용된 새로운 법안에 대해 주목하고 강화 및 완화된 부분을 파악하여 관련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

2. 관련 웹사이트

FDA Seeks to Make FSMA Proposals More Flexible, Targeted :

<http://www.fda.gov/Food/NewsEvents/ConstituentUpdates/ucm415132.htm>

FSMA Public Meeting: Supplemental Notices of Proposed Rulemaking :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418878.htm>

II

통관 컨설팅 Q&A

○ 한미 FTA 특혜 관세 적용 관련 질문

Q: 된장의 경우, 한미 FTA 특혜 관세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본래 된장은 콩을 반죽한 메주를 공기 중에 보관하여 일정한 습도 안에서 자연적으로 효모균이 발생하도록 하고 소금물에서 추출한 액체를 간장으로 나머지를 된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량생산되는 된장은 밀가루나 효모가 이미 포함된 메주가루를 섞어서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데 중요한 기준은 된장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재료 중 효모균이 있는 메주가루의 원산지입니다.

만약 다른 재료들이 모두 한국산이라 하더라도 생산촉진을 위한 효모균이 있는 메주가루가 한국이외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된장의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6.4%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Q: 요즘 유행하는 에너지 바의 경우, 한미 FTA 특혜 관세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에너지 바의 경우, 설탕성분, 초콜릿 포함 여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문의한 제품의 경우는 초콜릿이 포함되어 있어 ‘초콜릿 과자류’ 제품으로 수입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에너지바의 경우는 기존 관세가 5.6%이지만 한미 FTA 특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현재는 2.2%(KR 1806.31.0049)이며 2년 내 완전 철폐될 예정입니다.

* 포함 성분 : 곡물, 포도당 시럽, 설탕, 초콜릿, 말린 오렌지 껍질 등

○ 기타 사항

Q: 혼합시리얼을 대미 수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건강 트렌드에 맞춰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고섬유질, 무염, 무설탕 등 표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각종 성분의 무첨가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소금의 경우는 1 회제공량 (serving size)당 나트륨의 양이 5mg보다 적은 경우에 무염표기가 가능하며 무설탕의 경우는 설탕 성분이 생산과정에 추가되지 않은 경우, 고섬유질 식품의 기준은 1회 제공량 당 섬유질의 일일 권장기준치(daily value)의 20% 이상일 경우 표기가 가능합니다.

※ 대미수출업체의 질의사항을 Q&A 형태로 정리했으며 미국(뉴욕) 식품전문 통관사 답변을 정리한 것임

2014년 9월 미국 뉴욕 통관보류사례 세부내역 (총 10건)

발생 일자	품목	기관	기관 조치 사항	사후 처리 사항	결과
2014-09-05	어묵	AQI(농산물검역계획)/CBP(관세청)&수의서비스(VS)/동식물검역소(APHIS)	우유 혹은 계란 성분 함유 확인을 위한 제품성분표 요구	제품성분표제출 (우유 혹은 계란성분 불포함)	보류 해제
2014-09-05	삼계탕	FSIS(식품안전검사국)	재검사 요청	FDA인증랩을 통한 검사실시	보류중
2014-09-08	꽃감	FDA	잔류 농약성분 검출 가능성으로 인한 통관보류(카벤다질, 클로티아니딘, 메타미도포스 등)	검사결과, 잔류 농약성분 검출	반송처리
2014-09-15	드링크 제품	FDA	제품성분표, 수분활성도 및 산성화 레벨 정보 요구(생산제품증명번호 오류)	요청서류정보및시설공장 등록증(FCE),생산제품(SID) 증명번호 재확인 후 제출	보류 해제
2014-09-18	찰떡 국화빵	FDA	성분표시내 모든 재료와 알러지 유발 물질 표기가 없어 통관보류	FDA 기준에 맞춘 성분 및 알러지 유발 물질 표기	보류 해제
2014-09-19	참치 씨즈닝페이스트	AQI(농산물검역계획)/CBP(관세청)&수의서비스(VS)/동식물검역소(APHIS)	우유 혹은 계란 성분 함유 확인을 위한 제품성분표 요구	제품성분표제출 (우유 혹은 계란성분 불포함)	보류 해제
2014-09-24	진간장	AQI(농산물검역계획)/CBP(관세청)&수의서비스(VS)/동식물검역소(APHIS)	우유 혹은 계란 성분, 효모 함유 확인을 위한 제품성분표 요구	포함된 효모에 대한 설명서(유전적 명칭, 종자종류 등) 제공	보류 해제
2014-09-24	게맛 크래커	FDA	식품안전 및 라벨링 규정에 따른 재라벨링 요구	FDA 기준에 맞춘 성분표기 수정 조치	보류 해제
2014-09-25	냉동 빵 반죽	AQI(농산물검역계획)/CBP(관세청)&수의서비스(VS)/동식물검역소(APHIS)	우유 혹은 계란 성분, 효모 함유 확인을 위한 제품성분표 요구	우유 및 계란 성분이 포함 (수입허가증을 수입자에 요청)	보류중
2014-09-26	건멸치	FDA	비위생적 환경에서 가공 혹은 포장으로 인한 오염 가능성에 따른 통관 보류	HACCP(해썹) 관련 서류 제출	보류중